

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유효성분 농도 허용 한도 설정에 관한**보건부 공고**

불기 2567년(서기 2024년)

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6조 제13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, 보건부 장관은 2024년 2월 22일 개최된 화장품위원회 제1/2024차 회의의 권고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유효성분 농도 허용 한도는 등록자의 등록을 기준으로 15% 이하 또는 18% 이하로 정한다.

2024년 4월 25일 공고

총라난 스리카우

보건부 장관